국세청고시 제2020 - 13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문자･음성･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전자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정보(거래에 관해서 수령하거나 교부하는 주문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견적서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서류에 통상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의 수수를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란 자기테이프, 시디(CD), 디스켓, 유에스비(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밖에 정보 보존 장치를 말한다. 5. ‘가시성’이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